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 설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나종희

광주대학교 국제물류무역학과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election of Mandatory Subjects for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 Focused on Public Sector

Jong-Hei Ra

Dept. of International Logistics & Trading, Gwangju University

요약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명확한 판단기준의 부재로 정보화계획수립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과 판단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형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의무화 대상사업, 예외사업, 프로젝트 규모

Abstract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ISP) is a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s work, information flow, and current information systems, and planning information structures to achieve organizational strategies and objectives. In addition to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sector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trategy pla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sector.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IT project budget is reflected without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or this purpose, we set up a judgment model for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hrough expert group review (FGI) and conducted questionnaires on public sector experts. In addition, we proposed a project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and an exceptional project based on the size of informatization project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zation project.

Key Words : Public sector informatization project,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Mandatory project, Exception project, Project Scale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6

Received 31 January 2017, Revised 28 February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Jong-Hei Ra(Gwangju University)

Email: jhra@gwangj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조직의 업무, 정보흐름, 현행 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여,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구조를 계획하는 것이다[1].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 규모는 2011년 2조 1,562억원에서 2015년 4조 1,070억원으로 연평균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은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계획수립 없이 정보화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의 의무화는 비용대비 효과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으며, 따라서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작성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그러나 실제로는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낮고 더욱이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정보화사업 예산(구축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스템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대상을 정의하고자 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요건설정을 위해 1단계로 전문가집단검토(FGI)를 통해서 정보화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판단모델을 설정하고 2단계로 공공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검토(FGI)를 통해서 정보화사업비 규모, 정보화사업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보화계획수립 의무화대상과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이론적 배경 및 현황

2.1 정보화계획수립 개념 및 정의

일반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이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5,6]. 즉, 조직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의 인식과 지향해야 할 목표를 조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7]. 하지만 정보화전략계획은 정보시스템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 정보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8,9]. 이런 관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은 기업이 수립한 중장기 경영 전략과 계획을 토대로 사업 전개에 필요한 총체적인 정보 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단위 또는 통합 정보 체계의 개발을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경영 요구에 의한 정보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10,11].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전략계획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으로[12,13], 공공기관 자체 혹은 외부위탁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규모 예측이 가능하고 상세 RFP 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15].

2.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제도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지침에 그 근거를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대규모 투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5]. 둘째,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선 수립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예산요구토록 함으로써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ISP 등 건설링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2.3 공공부문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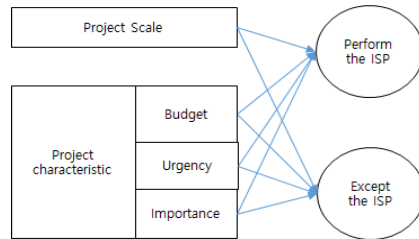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된 공공부문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은 총 225건으로 총 593억원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발주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76개 사업에 약 159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9개 사업에 약 24억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160개 사업에 약 418억원으로, 각각의 평균 사업비는 중앙행정기관 2억원, 지방자치단체 1.6억, 그리고 공공기관 2.6억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기존연구[5]에 의하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중 전체의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의 수행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스템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겠지만,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ISP의무화 판단모델 설정 및 설문조사

3.1 ISP의무화 판단 모델 설정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였다[16,17,18].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델파이 그룹은 학계(연구기관 포함) 전문가 3명, IT기업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Fig. 1]에서 보인 바 같은 ISP의무화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Fig. 1] Decision model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사업은 사업비와 사업특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데, “사업비 규모”요인에 따라 1차적으로 ISP의무화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2차적인 대상사업의 예산특성, 사업시급성, 사업 중요도 등 3가지 “사업특성” 요인에 따라 의무화대상에 대한 예외사업을 규정한다.

3.2 ISP의무화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무화에 대한 인식도와 더불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하고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2.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¹⁾의 정보화계획수립의 당사자인 정보화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정부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을 위한 3개 조사항목과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무화에 대한 필요성과 의무화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5개 항목, 그리고 1개의 오픈설문항목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2016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대상기관인 53개 중앙행정기관

<Table 1> Survey config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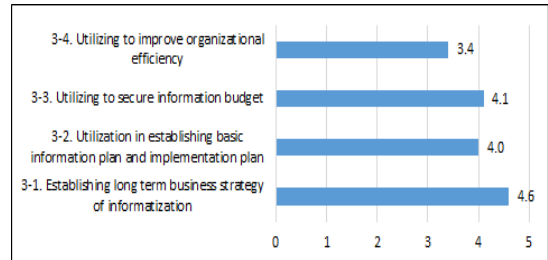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 of questions
Identify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formation strategy planning	3
Identify the necessity of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mandate and the criterion for the target	5
Others	1

설문조사는 준비과정과 설문배포 및 수집, 그리고 분석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하였다. 준비단계에는 설문항목을 조사하고, 타당성검토 과정을 통해 항목을 선정한 후, 설문구조에 각각의 설문항목을 배치하여 설문조안을 작성하였으며, 연구팀 및 사업관리자가 초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구의 수정과 배치를 조정하였다. 설문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e-mail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이중 약 50%인 27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3.2.2 설문조사결과 및 시사점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설문결과 5점 척도에 대해서 4.4점을 보였으며, 전체 27명의 응답자 중 “매우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로 응답한 비율이 40.7%로 전체의 88.8%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귀하 혹은 귀 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수행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해 전체 응답자 27명의 81.5%인 22명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는 설문결과가 일정정도 신뢰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인 “귀하 혹은 귀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당해 정보화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의 수립”에 매우 높은 결과(4.6점)를 보였으며, “정보화예산 확보에 활용(4.1점)”,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4.0점)”, “조직업무효율성 향상(3.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로부터 대부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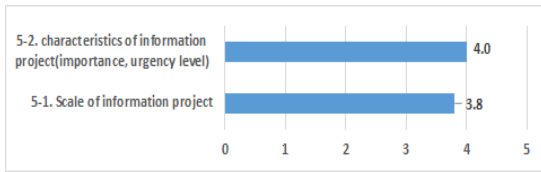
국가기관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다음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과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의무화의 필요성을 묻는 “4. 귀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3.4점을 보이고 있어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의 필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높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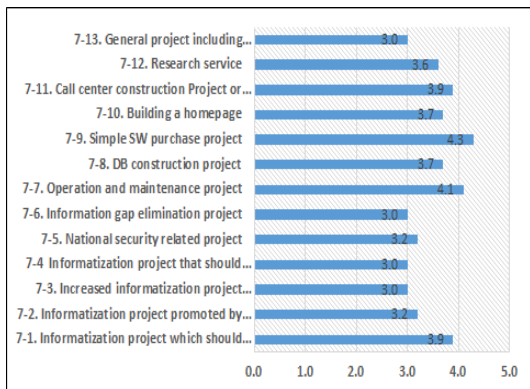
둘째, 의무화대상의 판단기준을 묻는 “만약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 한다면, 의무화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5-2. 중요도나 시급성과 같은 정보화사업 특성” 4.0점 그리고 “5-1. 정보화사업의 사업비” 3.8점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의무화 대상 정보화사업의 판단기준으로 정보화사업의 사업비와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의무화대상의 판단을 위한 기타의견으로 법제도의 제정 등으로 정보서비스가 필요시, 신규 개발사업의 규모, 자연과학 등을 포함하는 대상 범위에 대한 중요도 및 관심 구분, 신규 /고도화 등 정보화 사업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Fig. 3] Criteria for mandatory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셋째, 의무화 대상을 결정짓는 적절한 사업비 규모를 묻는 “만약,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을 정보화사업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의무화 대상을 결정짓는 적절한 사업비 규모는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20억 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30억 원과 50억 원이 각각 23.8%를 보였다. 이는 사전협의제도 등 여타의 정보화사업의 의무화제도에서 의무화에 대한 사업비 규모 20억 원 ~ 40억 원 정도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만약,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 한다면, 의무화 대상사업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의무화 대상사업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례로 제시한 13개 사업 유형 중 “단순SW구매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콜센터구축 등 단순용역 사업”, “단순 홈페이지구축사업”, “DB구축사업”, “연구용역사업” 등 7개 사업이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4] Exceptional informatization project

다섯째, “만약 일반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에 포함한다면, 전체사업비 중 정보화사업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23명중 9명(39.1%)이 전체사업비 중 정보화사업비의 비율이 50%가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4.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 수립

현재의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지침은 원칙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이후에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낮으며,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이를 거치지 않고 구축사업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의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 설정을 위해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Table 2>에서와 같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Table 2] Suggested criteria

Alternative	Advantage	Disadvantage
1) Mandatory for all informatization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is possible to maintain in the current system and to take the stability of the system. ISPs can be carried out even in the case of businesses with small budgets or information-related projects of mini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event excessive BPR / ISP establishment for the informatization business that does not have BPR / ISP performance (prevent budget waste)
2) Mandatory according to IT project budg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sistency with other schemes Prevent excessive ISP establishment for the informatization businesses that does not have BPR / ISP performance (prevent budget was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hibition of system consistency It is possible that the informatization business of a small-scale informatization project or a department with a low budget is excluded even though it is necessary for an ISP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appropriate project cost scale.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은 사업비 규모의 고려 여부에 따라 (1안) 현행과 같이 전체를 의무화하고 사업특성에 근거하여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방안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방안과 (2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1안)의 경우, 현행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제도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규모가 작은 부처의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가능하고, 정보화사업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성과가 낮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수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2안)의 경우, 정보화관련 다른 의무화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으며,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성과가 낮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규모 정보화사업이나 예산이 적은 부처의 정보화사업은 ISP수립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외될 가능성을 갖으며, 정보화사업비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규정하기 위한 적정 사업비 규모(기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Table 3> Details by criteria

Alternative	Mandatory	Exception
1) Mandatory for all informatization projects	All informatization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zation projects to be urgently implemented in relation to disasters • Simple purchase / installation project
2) Mandatory according to IT project budget	<p>[Project Expens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formation project more than 4 billion total project cost • Information business with annual project cost over 2 billion <p>[All proje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lti-department linkage. Informatization project for joint construction or uti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ration and maintenance project • Simple service project including call center construction • Simple homepage construction project • DB construction business, research service project • Other projects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한편, 각(안)별로 의무화대상과 예외사업은 <Table 3>과 같다. 의무화대상은 국가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2안)의 경우 적정 사업비 규모(기준)를 설문조사결과와 전문가의견수렴(FGI)을 토대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40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사업비를 2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효과가 크고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부처 연계, 공동구축 혹은 활용을 위한 정보화사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외사업의 경우는 (1안)과 (2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재난과 관련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정보화사업, 단순 물품구매/설치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콜센터구축 등 단순용역사업, 단순 홈페이지구축사업, DB구축사업,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5. 결론

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선 수립 후 요구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범정부 EA(GEAP)에 등록된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사업 중 농림부 농업기반정보 고도화(13억) 등 15건 사업이 ISP 미 수립하는 등 실제로는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4]. 이에 따라 사전 ISP수립 대상사업을 정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수립 대상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판단기준

(안)은 2가지로 첫째, 전체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사업을 인정하는 방안과 둘째,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사업비 20억 이상의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사업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BPR) 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와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화대상 판단모델과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설문샘플이 중앙행정기관 26개로 매우 적어 전문가집단검토(FGI)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객관화하고 판단기준의 정교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6.

REFERENCES

- [1] Michael J. Earl,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 Prentice Hall, 1989.
- [2]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Guidelines for 2017 budgeting and fund management, 2016.
- [3]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Guidelines for Managing Total Cost of Ownership, 2015.
- [4] Budget Committee, Report on review of FY2014 financial closing and approval of spending expenditure, 2015.
- [5] M.Y. Kim, B.S. Lee, "A Study on Integration ISP Methodology by Connection with EA and BPR",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10, pp. 201-212, 2012.
- [6] M.Y. Kim, B.S. Lee, "A Study on the Rural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using ISP Methodology",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 19, No. 2, pp.193-202, 2013.
- [7] Jang. S. Y., "Influence of Organizational Factors on Information Systems Strategic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1989.
- [8] Hammer. M., "Reengineering Work: Don't Automate, Obliterate", Harvard Business Review, Vol. 68, No. 4, pp. 104-112, July-August 1990.
- [9] Davenport. T. and Short. J. E., "The New Industrial Enginee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Redesign", Sloan Management Review, Vol. 31, No. 4, pp. 11-27, Summer, 1990
- [10] Carlson, W.M., "Business information analysis and integration technique : A new horizon", Data Base, 1979.
- [11] S.K. Kim, "Understanding ISP Methodologies and Identifying Requirements of ISP-Supporting Software Tool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Database, Vol. 5, No. 1, pp 51-67, 1998.
- [12] J.E. Shin, Deagon Cho, "Development of National e-Health Strategy", Vol. 42, No. 3, pp. 198-208, 2016.
- [13] National informatization Agency, "Audit Guideline for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V1.0", 2009.
- [14]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anual for Establishing Informatization Plan for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 2016
- [15]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Guideline for Informatization Implementation Plan 2016, 2015.
- [16] K.S. Noh, "A Exploratory Study on Big-data based Election Campaign Strategy Model in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1, no.12, pp.113-120, 2013.
- [17] Young-Jun Kim, "Convergence of Business Information System Process using Knowledge-based Method",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65-71, 2015.
- [18] K. I. Kim, "A Model of the influence of IMS oper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5, 2016.

나 종 회(Ra, Jong Hei)



- 199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공학사)
- 199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공학석사)
- 200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공학박사)
- 2001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국제물류무역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클라우드컴퓨팅, 정보시스템감리, 지능정보화
- E-Mail : jhra@gwangju.ac.kr